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3	53	-
	부단체장	36	36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37	216	-21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170	59	-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84	
	의원국외여비		27	
지방보조금		13,613	11,705	-1,908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987	987	-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047	1,047	-
공무원 일·숙직비		50천원	50천원	

- ▶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s.go.kr>)

(참고)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

항목별		세 부 내 역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2,800천원×1년
	부단체장	36,300천원×1년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행자부 기준액 통보 237백만원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<p>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</p> <p>총한도액 = [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×(1+0.297) +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×(1+0.176) +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×(1+0.05)]</p> <p>※ 단, 의원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,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(시군구는 시도)와 협의하여 조정가능</p> <p>※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: 170,732천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의정운영공통경비 : 59,310천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의회운영업무추진비 : 84,070천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의원 국외여비 : 27,352천원</p>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
	의원국외여비	
지방보조금		<p>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(6과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 - 보조금 예산은 국·도비 보조금(지방비 부담금 포함)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장이장 : 기본수당 월 200,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%, 회의참석수당 1회 20,000원(월 2회) - 반장 : 연 50,000원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-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9만원이내(1인당 평균)로 설정 (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)
공무원 일·숙직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액 1일당 일직비 50천원, 숙직비 50천원 ※ 다만, 기준액은 근무여건,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%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